

[별표 19의2] <신설 2001.9.24>

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제143조관련)

1. 항공기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

(단위 : 시간)

항공기승무원 편성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부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비 고

1. "승무시간"이라 함은 항공기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까지 경과한 총시간을 말한다.
2. "비행근무시간"이라 함은 항공기승무원이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한 시각부터 1개 또는 연속되는 2개구간 이상의 비행을 종료한 후 디브리핑(Debriefing) 시각까지의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시간을 말한다.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2. 항공기승무원의 연속되는 30일·90일 및 연간 최대승무시간 기준

항공기승무원 편성	연속30일	연속90일	1년
기장 1명	100	280	1,000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100	280	1,000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0	300	1,000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120	300	1,000
기장 2명, 부조종사 1명	120	300	1,000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120	350	1,000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20	350	1,000

비고 : 항공기승무원 편성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편성 항목의 최대승무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3. 항공기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8시간까지	8시간 이상

8시간초과- 9시간까지	9시간 이상
9시간초과-10시간까지	10시간 이상
10시간초과-11시간까지	11시간 이상
11시간초과-12시간까지	12시간 이상
12시간초과-13시간까지	13시간 이상
13시간초과-14시간까지	14시간 이상
14시간초과-15시간까지	15시간 이상
15시간초과-16시간까지	16시간 이상
16시간초과-17시간까지	18시간 이상
17시간초과-18시간까지	20시간 이상
18시간초과-19시간까지	22시간 이상
19시간초과-20시간까지	24시간 이상
비 고 1.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항공기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위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항공기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